



###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내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 제3조)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고성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 제6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필요한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4. 1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